

#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

## 회 의 록

일 시	2022. 9. 7.(수) 13:30 ~ 14:45
장 소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 홀
참석위원	재적위원 10명 중 8명 참석
내 용	<p>① 위원장 선출 : 김창우</p> <p>② 회의공개여부 결정 : 공개</p> <p>③ 의정비 결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정활동비 기준 : 현재 수령 금액으로 동결</li><li>- 월정수당 기준 : 증액</li><li>- 세부적인 월정수당 금액 : 2차 회의에서 논의</li></ul> <p>④ 차기 회의 일정 결정 (2차 회의 : 2022. 9. 15. 14:00)</p>
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1차 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2022. 9. 7.

작 성 자                      김 근 령

위 원 장                      김 창 우

제 1 차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

2022년 9월 7일(수) 13:30~14:45

## 【 심의안건 】

- ① 위원장 선출
- ② 회의공개여부 결정
- ③ 의정비 결정 기준
- ④ 차기 회의 일정 결정

## 【 심의결과 】

- ① 위원장 선출 : 김창우
- ② 회의공개여부 결정 : 공개
- ③ 의정비 결정 기준
  - 의정활동비 : 현재 수령 금액으로 동결
  - 월정수당 기준 : 증액
  - 세부적인 월정수당 금액 : 2차 회의에서 논의
- ④ 차기 회의 일정 결정 : 2022. 9. 15.(목) 14:00

## ■ 간사(정책기획팀장)

- 반갑습니다. 정책기획팀장 ○○○ 입니다.
-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정비 심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회의시작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례, 위원소개, 위원장 선출, 의정비 개요 설명, 회의공개여부 논의, 의정비 결정 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은 생략하고 위촉장은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촉 위원님들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 김창우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배상열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하희택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윤기준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장소영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최철호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이정원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백서훈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 이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니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의회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경험이 많고 의정활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 간사(정책기획팀장)

- 다른 분들의 생각도 같으십니까?

## ■ 위원모두

- 예.

## ■ 간사(정책기획팀장)

- 그럼 김창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김창우 위원

-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엇그제 태풍 힌남노가 남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고가 있었던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간사(정책기획팀장)

- 지금부터는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지금부터 2023년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8명으로 선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언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팀장으로부터 2023년 의정비심의 관련 회의자료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님 회의자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정책기획팀장)

- 예, 의정심의회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개요입니다. 의정비는 91년부터 2003년까지는 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시작했고, 2003년 7월 18일부터 명예직이 삭제되고 의정활동비와 여비수당 등 실비 성격으로 지급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월정수당이 새로 생겨서 유급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인구를 고려한 법정 기준액이 제정이 되어서 주민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의정비의 종류에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및 여비가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의원님들의 직무활동에 대해서 보수 성격으로 지급하는 돈이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국회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이나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광역 의원은 월 150만 원 이내,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최대 금액인 월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있고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남해군 의정비 현황을 보면 2018년에 결정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계속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110만 원을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의정비 결정 주체는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남해군과 남해군의회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결정범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4년간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입니다. 결정방법은 위원회에서 심의 및 정하여 국회의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정비 결정기한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올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올해와 같은 경우에 구성을 하게 되어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 군의회의 의장으로부터 기관별 2명 추천을 받아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위원 자격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8세 이상인 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외 기준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 위원님은 위촉장을 받은 후에 심의 위원으로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를 하셔야되는데,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늘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정하고 의정비 개요를 설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먼저 논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동결이나 증액이나 삭감이나 이것부터 1차에서 결정을 하고, 만약 증액할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초과해서 결정할 것인지 만약 초과하게 된다면 여론조사 방법과 최대, 최소 범위를 정해야합니다. 그 다음 만약 오늘 결정이 나지 않으면 2차, 3차 심의까지 넘어가야합니다. 그리고 의사 정족수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규정은 없고, 의결 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됩니다. 심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회의록과 결정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해서 공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2022년도 월정수당 대비해서 2023년 결정액이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

민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보수인상률보다 초과해서 결정하게 되면 여론 수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론 수렴을 하게 되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CATI 방식이나 ARS 방식 중에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CATI 방식은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의 질문을 읽어주면서 응답 결과를 바로바로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식이고 ARS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ARS 방식보다는 CATI 방식을 행안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CATI는 다양하고 정교한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조사 대상의 통제와 관리가 쉬워서 조사 오류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기본적인 문항인 나이, 성별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올해 금액인 3,320만 원을 기준으로 2023년도의 금액 범위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했을 때 지금 현재보다 금액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주민들이 선택한 의견을 반드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설문조사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참조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설문대상자 참여는 500명이 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500명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결정되면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결정이 되면 남해군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표를 해야 합니다. 심의회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을 의회에서는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4년 간의 내용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면 오늘 회의를 하고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2차 회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지급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지급기준은 2022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을 하느냐, 동결을 하느냐, 삭감을 하느냐이고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에는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 말 지역주민 수 증감 여부, 4년 전과 대비해서 올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의 증감 여부,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인구규모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합니다. 의정활동비는 우리 군에서 2003년부터 최대 한도인 11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어서 결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오늘 1차 회의에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금액을 결정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래서 만약 초과 인상을 결정할 때는 주민의견수렴 방법이나 최소치, 최대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결정을 해야합니다. 또한 의견 수렴할 때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 2차 회의는 9월 말이나 10월 초 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의회에 통보를 하면 의회에서는 12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정책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 위원장님이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의정활동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까? 4년 동안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활동비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 처음 활동을 할 때 급여에 대해 모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 이것저것 빠니까 24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적은지 많은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이라는게 욕심을 내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하면 남해군은 적은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전부는 아니고 오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 ○○○ 위원

- 네

■ 간사(정책기획팀장)

- 남해군의 의정비가 좀 낮은 것은 2018년 이전에는 계속 동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 결정할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정하자해서 인상을 했고, 그전에는 계속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2023년 금액을 먼저 정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2년 차에서 4년 차 금액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분의 1을 하자 보수인상률만큼 하자 격년제로 하자 이런 것은 다시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먼저 2023년 것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2년 차에서 4년 차를 또 정해야 합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

- 이 자료가 어찌보면 우리가 접하기 좀 힘든 자료인데, 우리한테 사전에 먼저 자료를 줬으면 주변의 얘기도 듣고 공부라도 하고 왔을텐데 아쉽습니다.

■ **간사(정책기획팀장)**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

- 제가 질문하려고 한 내용이 이미 회의자료에 다 나와있네요. 경상남도에서 남해군이 가장 최저치라고 하셨지요.

■ **간사(정책기획팀장)**

- 예. 남해가 제일 최저치고 거기 보시면 하동과 산청, 함양이 좀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그 금액에서는 남해가 제일 최저치는 맞습니다.

■ ○○○ 위원

-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는 그러면 4년 동안 보수인상률로 올라갔나요?

■ **간사(정책기획팀장)**

- 예. 해마다 보수인상률로 인상해왔습니다.

■ **위원장**

-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간사(정책기획팀장)

○ 예.

■ 위원장

○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해서 결정하려면 꼭 ARS를 해야합니까?

■ 간사(정책기획팀장)

○ 아니요. 꼭 ARS를 하지 않아도 되고, CATI가 좀더 정확하고 오류가 적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민의견수렴 방식으로 공청회도 나와있긴한데 지역 특성상 공청회는 조금 어렵습니다.

■ 위원장

○ 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 위원

○ 지금 남해군 의회 의정비가 전국 82개 군부에서는 연 199만 원 정도 월 평균은 16만 6천 원, 그 다음 경남에서는 연 139만 원 월 11만 6천 원 정도가 적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의정비를 올려주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올려주고 의정활동을 좀 열심히 하도록 채찍질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간사(정책기획팀장)

- 이게 무조건 주민의견수렴을 한다고해서 꼭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한선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높다 낮게하자 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여론조사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진짜 올리고 싶어도 만약 여론조사에서 낮게 나와버리면 그 결과에 따라 낮춰야되는 그런 맹점이 있으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 ○○○ 위원

-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정도 인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군민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했을 때 의견수렴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의견 수렴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지금 현재 군의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올려주려고 할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봤자 답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보수인상을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 간사(정책기획팀장)

- 지금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 ■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오늘 회의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님의 자료 설명에도 있었지만 심의회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원칙인 만큼 회의는 공개로 하고 사안에 따라 비공개 요청이 있을 시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 위원모두

○ 이견 당연히 공개해야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공개가 원칙인 만큼 회의는 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모두

○ 네.

■ 위원장

○ 이의 없으시면 공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입니다. 앞에 설명했다시피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110만 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 위원모두

○ 네.

■ 위원장

○ 예. 그러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월정수당에 대해 동결할 것인가, 증액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옛날엔 공무원 시험을 많이 쳤는데, 요즘엔 인기 직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공무원들도 연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많아지듯이 가난한 사람은 정치를 못하고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뜻이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선거를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비용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월정수당을 올려주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올렸으면 좋겠고, 여론조사를 해서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 위원

- 사실 저도 좀 수당을 올렸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군민들의 정서가.... 과연 군의원들의 수당을 높이는데 동의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증액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동결이나 삭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월정수당의 기준은 증액으로 하는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위원모두

- 예.

## ■ 위원장

- 예. 그럼 증액으로 해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 증액 범위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2023년 월정수당 증액 범위입니다. 앞서 설명하셨듯이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증액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해서 결과가 꼭 증액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 이 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더 올려주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야하는데 꼭 인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사실 군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꼭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하려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럴거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 예. 그러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아까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야~군의원” 이러면서 서로 하려고 했는데, 요즘엔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금전적인 부분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중한 일을 시켜놓고 책임도 부여해놓고는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사무관급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들이 남해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공론화 시켜서 한번 해보면 안되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 ○○○ 위원

- 저도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3,3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은 공무원 어떤 급이랑 비슷합니까?

■ 간사(정책기획팀장)

- 7급 공무원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주민의견수렴을 했을 때 주민들이 올려주라고 하면 다 올려주는겁니까?

■ **간사(정책기획팀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최소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도 위원회에서 정하셔야합니다.

■ ○○○ **위원**

-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주민 수라든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라든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잖아요?그 중에서 의정활동실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군의원 개인별 실적을 산정해서 활동이 더 왕성한 분들에게는 더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하는 제도는 없나요?그렇게하면 어떻게 해서든 군의원님들이 더욱더 군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할 것 같은데.

■ **간사(정책기획팀장)**

- 네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 **위원장**

- 사실 제가 활동을 해봤지만 군의원들이 책임과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 돈을 보고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 ○○○ **위원**

-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라 제가 여태껏 한마디도 못했는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 같으면 1년에 28만 원 정도 오르더라구요. 얼마 되지는 않은데, 앞에서 얘기하셨듯이 군의원님들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고 아까 말했던 3,322만원이라는 돈이 공무원 7급에 한하는 돈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도 돈을 더 올려드리고 싶지만 1.4%라는 기준안에서 인상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 또 보충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 ■ ○○○ 위원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생각이 좋고 하면 정치에 나갈 수 있게 해야합니다. 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은 2억씩 받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군의원은 1.4%로 정도로 논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젊은 정치인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려면 공론화 시켜서 더 현실적인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 위원

- 오늘 신문사에서도 나오셨지만은 얼마 전에 의정비 관련해서 신문에 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침에 이장들이 20~30명 정도 이장 사랑방에 앉아서 그 신문을 다들 돌려봤는데, 그때는 제가 의정비 위원으로 선출이 될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장들이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말이 이 사람들 수당을 왜 올려주냐는 겁니다. 거의 모든 이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좀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합니다.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됩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안되면 다음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됩니다.

-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자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투표 결과 : 5명>

-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보다 초과해서 인상하자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투표 결과 : 2명>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거수 투표 결과도 그렇고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회의에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모두**

- 예.

**■ 위원장**

- 예, 그러면 2차 회의는 9월 15일 목요일 14시로 하고자 하는데, 다들 괜찮으십니까?

**■ 위원모두**

- 예.

**■ 위원장**

- 예, 2차 회의는 9월 15일 목요일 14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